



의안번호	제12호
------	------

소상공인 긴급특례보증 출연 동의안

제 출 자	논 산 시 장
제출연월일	2020. 2. 15.

소상공인 긴급특례보증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제12호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0. 2. 15.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최근 신종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논산시 소재 소상공인에 대한 소상공인 긴급특례보증을 통해 자금 유통을 원활히하여 지역상공업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- 충남신용보증재단에 긴급특례보증 출연하기 위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사업개요

- 추진근거 : 논산시 일반회계 예비비(재해·재난목적)
- 지원금액 : 3억원
- 지원기간 : 2020. 2. ~ 예산 소진 시
- 지원대상 : 논산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
 - 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(상시근로자 10인 미만)
 - 기 타(상시근로자 5인 미만)
- 지원조건
 - 지원한도 : 소상공인 1개 업체당 1회 3천만원 이내
 - 보증서 발급 수수료 : 0.5%
 - 용자조건 : 2년거치 일시상환
- 접수기관 : 충남신용보증재단 논산지점

□ 관련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
- 「지방재정법」
- 「논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관한 조례」

지방자치법

제129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
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지방재정법

제43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회계(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·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논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

제4조(특례보증) ① 시장은 시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 지원에 결격 사유가 없는 소상공을 말한다

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사업자별 3천만원 이하로 한다.